

교무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2019.04.17. 개정 2022.04.04. 개정 2024.05.30. 개정 2024.12.12., 개정 2026.03.26.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48조에 의거 교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7.15.>

제2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으로 교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글로벌대외교류처장, 총무처장, 산학협력단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교직원으로 한다.<개정 2011.07.15., 2019.04.17., 2022.04.04., 2024.12.12., 2026.03.26.>
- ② 위원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 또는 총장이 위임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04.17., 2022.04.04.>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② 계열(전공),(학)과, 기구 및 제도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08.>
- ③ 대학행정에 관한 중요사항
- ④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사항
- ⑤ 학사력에 관한 사항
- ⑥ 교육 및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
- ⑦ <삭제 2016.12.08.>
- ⑧ 학과정원에 관한 사항
- ⑨ 위원회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 ⑩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07.12.05><개정 2013.06.04.>

제5조 (회의 및 의결)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 위원 전원의 전자 서명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04.17.><개정 2024.05.30.>

제7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수당)

위원과 간사에게는 수당과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전에 제정되어 시행중인 교무위원회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에 자동 폐기된다.

부 칙(2007.12.0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0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4.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1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3.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